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가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본 법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1. 제 2 조에서 규정한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이외의 것이라면 어떤 차별적 언동이라도 허용된다는 이해는 잘못이며, 본 법의 취지, 일본국 헌법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적절하게 대처할 것.

2.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내용이나 빈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할 것.

3.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국의 출신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행위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실시할 것.

이를 결의함.